

학생연구원 지원지침

제정 2021. 7. 2.
전면개정 2022. 9.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해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식품연’이라 함)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원”이라 함은 학생신분으로 본인의 전공지식 습득 또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연수책임자에게 논문 작성 등을 지도받고,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연수책임자”라 함은 연수직의 연수 지도 및 인건비 확보 등을 관리하는 하는 전반적인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식품연의 의무) 식품연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계정(연구개발과제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을 위해 식품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수책임자의 의무) 연수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원을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제5조(학생연구원의 의무) 학생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수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수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전 연수책임자 및 학생연구원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4. 인사 및 복무관리 지침을 포함한 식품연의 지침을 준수하고 근로계약 위반 시 책임부담

제6조(연구환경 조성) 연수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7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책임자는 전년도 활용 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참여확약서 작성 및 변경) ① 식품연 원장 및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별표 제1호>의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구체적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담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 할 수 없다.

- ② 연수책임자와 학생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조 제①항의 연구참여확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연수책임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할 과제의 협약체결, 변경, 중단, 해약 등으로 연구참여확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학생연구원의 학적변동, 개인사정 등으로 연구참여확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학생연구원이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연구참여확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③ 본 연구참여확약서는 통합정보시스템에 학생연구원 및 연수책임자가 서명하고, 학생연구원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가 접수하는 것으로 체결을 갈음한다.

제9조(업무범위 제한)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학업·연구권 보장)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원은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수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연구원의 처우

제12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학사과정: 미정(학사과정은 운영하지 않음)
- 나. 석사과정: 월 2,000,000원
- 다. 박사과정: 월 2,500,000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6조 제1항에 따라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 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별표7]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제13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식품연은 별도로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한다.

②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원의 연구수당·기술료를 산정하는 등 연구참여정도와 연구성과가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학생연구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인건비 지급) ①식품연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식품연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매월 학생연구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하는 등 학생연구원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6조(학생인건비 관리) 식품연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자체점검) 식품연은 본 지침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식품연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연구원 인권 및 권익보호

제19조(인격권 보장) 연수책임자와 학생연구원 간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제20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 보장) 식품연은 학생연구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학생인건비 유용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식품연은 학생인건비의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원은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식품연 또는 연수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식품연 또는 연수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원의 지출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고충·상담 창구운영) 식품연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식품연이 학생연구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처벌·제재) ① 학생연구원은 연수책임자 등이 동 지침을 위반한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연수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수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학생연구원 관리부서, 감사부서 등 원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식품연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원의 지도교수 변경,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6조(준용지침) 학생연구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연의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21. 7.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 9. 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학생연구원 연구참여확약서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원 인적사항

성명		학번		생년월일	
소속(학과명)		과정 및 학기	() 과정 () 학기		
과학기술인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주제 및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다. 계정단위 학생인건비 총지급액 및 지급률

계정	계정책임자	지급총액	지급개월수	*월평균지급률
			연구참여기간과동일	

*월평균지급률 = 월평균지급액(지급총액/지급개월수)/기준금액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21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1인 1계좌)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계정책임자

성명			
소속(학과명)		직급	
연락처	(연구실 전화)		(E-mail)

3. 기타 협약사항

- 가. 학생연구원은 연구 수행시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연구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나.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 다.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 라. 연수책임자는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마. 연수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 바.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 부당회수)하지 않는다.
- 사. 학생연구원은 연수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 아. 학생연구원은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이 발생시 연수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 자.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이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차.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을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하며, 학생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원 : (서명 또는 인)

연수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연구원장 : (직인)